15 - 건설업 비계공의 악성중피종

성별	남	나이	73세	직종	비계공	직업관련성	있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1. 개요

민〇〇는 1960년대부터 건설직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고, 1970년 10월 건설회사 K사에 비계공으로 근무하며 제철공장내 신축 공사와 개보수, 증죽, 해체공사작업을 수행했다. 2008년 12월경부터 호흡곤란 및 소화불량 증세가 있었고, 건강검진 결과 흉부질환 의심으로 2차 검진 권유 받았으며,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개인병원에서 폐렴 의증 진단을 받고, M병원에서 '가슴막의 악성중피종' 진단을 받았다.

2. 작업환경

민○○는 1960년대 이후 총 23년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며, K 사의 건설현장에서는 1971년 8월부터 1982년 3월까지 간헐적으로 총 7.6년 근무를 하였다.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비계공으로 주로 참여하였고 개보수 증축 공사에는 간헐적으로 참여하였다. 비계공으로 주로 활동하였는데 해당 업무는 배관, 용접, 도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건물 및 설비 외벽에 설치, 해체하는 작업으로 철체 파이프를 세우고 클립을 체결한 후 발판을 놓아 작업공간을 만들며 공정이 완료된 후 이를 해체하는 것이다. 비계설치 및 해체 업무 외에도 시멘트 타설, 비계위에서 해머를 이용한 내부 벽면 및 지붕해체작업, 골조, 철근, 형틀의 운반작업, 공사현장에서의 청소업무 등 기타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으며, 작업시 보호구는 착용하지 않았으며, 탈의실이나 샤워시설은 없었다. 슬레이트 지붕을 해머로 깨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작업시석면 노출이 있었다.

3. 의학적 소견

민〇〇는 고혈압 외 특별한 질환이 없었다. 2008년 12월초부터 숨쉬기 힘들어 개인병원에서 폐렴 의증 진단을 받고 2008년 12월 중순 K병원에서 가슴막의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으며, 1년간 투병하였으나 2010년 1월 사망하였다. 흡연력은 30년이상 하루 반갑-한갑미만으로 약 30갑년 이상이다. 음주는 소주한 병을 주 3~4회 마셨다.

4. 결론

민〇〇의 가슴막 악성중피종은

- 비계의 해체, 건물의 해체, 철거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면함유물질에 상당량 노출가능성이 있고,
-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악성중피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,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.